

계룡자이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및 구비 서류 안내문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계룡자이 분양권 전매 관련 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7호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 절차를 안내하오니 계약자님께서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명의변경 일자: **매월 10일**
- ▣ 명의변경 업무시간: 10:00 ~ 15:00 / ※ **사전 방문 예약제 운영**
- ▣ 결정 통보 및 계약서 수령: 접수일로부터 15일 이후 개별 통보 (※ 통보 일정은 변경 가능)
 ※ **명의변경 후 계약서 당일 불출 불가**: LH 전매 동의 접수 및 발급 (약 15일 이상 소요)
- ▣ 문의전화: 042-721-4000
- ▣ 명의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 (**양도인 본인 불참 또는 서류 미비 시 명의변경 접수 불가**)

순서 및 절차	주요내용	구비 서류	
		양도인(증여자)	양수인(수증자)
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계룡시청 방문 [계약자 → 계룡시청]	※ 양도인(증여자), 양수인(수증자) - (분양권)증여계약서(지분표시) 작성 후 계룡시청 검인 → 검인 증여계약서 1부 수령 ※ 계룡시청 토지정책과 ☎ 042-840-2808	1. 공급계약서 원본 2. 검인 증여계약서 3. 신분증	
② 전매사유 사전심사 및 전매동의서 제출 분양사무소 방문 [계약자 → 시공사]	1. 양도인(증여자), 양수인(수증자) 방문 ※ 양도인(증여자) 대리 불가 2. 전매관련 입증서류 제출 3.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작성 4. 권리의무 승계 내역서 기재 및 날인 - 공급계약서 뒷면 기재 ※ 계약서는 당일 불출 불가 (추후 통보 예정) ※ 문의전화: 042-721-4000	1. 공급계약서 원본 2. 검인 증여계약서 3.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분양사무소 비치) 4. 주민등록표등본 2부 5. 가족관계증명서 2부 6. 인감증명서 2부(매도용)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7. 인감도장, 신분증 ※ 중도금 대출 신청세대는 연대보증 확인관련 서류 (은행발급)	1. 인감증명서 2부 ※ 대리시 위임용 인감증명서 추가 2.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2부
③ 전매동의서 발급신청 및 발급	- 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 6층 주택판매부 - 접수시간: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042-470-0773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후 동의여부 결정 통보
④ 계약서 수령 분양사무소 방문 [시공사 → 계약자]	- 전매동의서 발급 및 계약서 불출 ※ 계약서 수령일까지는 약 15일 이상 소요되며, 전매동의서 발급 이후 유선 통보 예정임.		- 전매동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권리의무승계 계약 완료
⑤ 증여세 신고	- 배우자간 증여는 최근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이름, 주민번호 전부 포함 "상세" 로 발급** 하시길 바랍니다.